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377호
2. 발 의 자 : 신원철 의원
3. 발의일자 : 2018. 2. 12.
4. 회부일자 : 2018. 2. 19.

II .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
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두고,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
지만, 현행 조례는 행정협의회의 위원을 서울시 및 교육청의 관련 실·
국장으로만 구성하고 있음. 이에 의회 의원의 협의회 참여 근거를 마
련하여 각종 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교육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주
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정기회의를 1회에서 2회로 늘리고, 학교 급
식 및 지진, 화재 시 안전 관리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 사항에 추가
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1. 학교급식 개선 및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2조제 13호 및 제14호).
2. 협의회 위원에 서울특별시의원을 추가함(안 제3조제3항).
3. 협의회 개최를 “1회”에서 “2회”로 조정함(안 제5조제2항).

Ⅳ. 참고사항

1. 관계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안건 참고).
3. 기 타

입법예고(2018.2.22~3.2): 의견 없음.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18년 2월 12일 신원철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 2377호로 발의되어 2018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회의 기능이 강화되도록 내용을 보완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과 「자치법규 입안실무」 에 맞도록 조문을 정비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취지면에서의 검토

-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의 기능에 ‘학교급식 개선에 관한 사항’과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협의·조정 대상을 확대하고(안 제2조) 그 구성에 있어서도 주민의 대표기관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포함하여 15명으로 확대하며(안 제3조), 연간 회의도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등(안 제5조) 협의회 운영의 내실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 또한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과 「자치법규 입안실무」 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다는 점에서(안 제1조, 제4조, 제8조, 제9조) 조례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위촉직의 임기문제(안 제3조)

- 다만, 동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은 협의회 위원으로서 서울특별시장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서울특별시교육청 실·국장과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장 등의 비선출직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서울특별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명을 서울특별시장과 서울

특별시교육감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다른 시·도교육청과 비교는 [붙임] 참고).

- 이와 같이 규정할 경우 안 제1호와 제2호의 비선출직 공무원은 당연히 그 직위에 있는 동안 협의회 위원으로서의 임기가 보장되는 것이라 하겠지만 안 제3호의 위촉직인 시의원은 그 임기에 대해 명문의 규정이 없어 시의원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위원자격이 유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인바 위촉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촉위원을 규정하고 있는 다른 시·도교육청은 대부분 2년으로¹⁾ 그 임기를 명문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촉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별도의 조문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표] 시·도별 위촉직 위원 규정 현황

구분	시의회 의원(12개 시·도)	교육분야 전문가(9개 시·도)
시·도 교육청	강원,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세종, 인천, 전남, 제주, 충남, 충북	강원, 경북, 광주, 대구, 대전, 세종, 전남, 충남, 충북
임기	2년	

-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안 제3조와 관련하여 현행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가²⁾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에 참여하는 의원의 심의·의결 회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기관대립 구조의 지방자치제도에서 시의원의 협의회 참여가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

1) 대전광역시교육청만 「대전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항에서 “협의회의 위원은 회의 종료 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 의원은 법률 또는 조례에서 검직이 금지되지 아니한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에도 해당 위원회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1. 의원이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2.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분립의 원리에 대한 사전적·적극적 관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하면서도 그 임기에 대해서는 별도의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참여협력담당관-2293, 2018.3.5).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도별 교육행정협의회 운영 현황

(2018. 3월 기준)

시도명	인원	공동의장	위원 정수	의원 포함 여부	정기회 횟수
서울	10인	교육감, 시장	(교) 실국장 4인 (시) 실국장 4인	미 포함	1회
경기	규정 無	교육감, 도지사	(교)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관 (도) 기획조정실장, 교육협력국장	미 포함	수시
인천	10인	교육감, 시장	(교) 실국장 3인, (시) 실국장 3인 시의회 추천 의원 2인	2명(시의원)	2회
강원	15인 이내	교육감, 도지사	(교) 실국장 2인, (시) 실국장 2인 기타 교육관계자(교수, 학부모)	1명(교육위원)	1회
부산	18인 이내	교육감, 시장	(교),(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시의회 추천 시의원 2인	2명 (교육위원 1 포함)	2회
대구	12인	"	(교),(시) 국(과)장급 2~4인 시의회 추천, 기타 교육관계자 각 2인	2명 (교육위원 1 포함)	1회
광주	15인 이내	"	(교),(시) 국장 2인 시의회 추천 의원 1인, 교육관계자 8인	1명 (시의원)	"
대전	20인 이내	"	(교),(시) 관계 공무원 시의원 2인 및 교육 관계자	2명 (시의원)	"
울산	14인 이내	"	(교),(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미 포함	"
세종	15인 이내	"	(교) 실국장 3인, (시) 실국장 4인 시의회 지명의원 2인, 교육전문가 2인	2명 (시의원)	"
충남	16인 이내	교육감, 도지사	(교) 과장 2인, (도) 과장 2인 도의회 추천 2인, 교육전문가 6인	2명 (도의원)	"
충북	14인 이내	"	(교) 실국장 3인, (도) 실국장 3인 시의회 지명의원 2인, 교육전문가 6인	2명 (도의원)	"
경남	15인 이내	"	(교),(도) 국(과)장급 공무원	미 포함	"
경북	12인 이내	"	(교),(도) 국장급 공무원 교육 관계자	2명 (도의원)	"
전남	16인 이내	"	(교) 국장 2인, (도) 국장 2인 도의회 추천 도의원 2인	2명 (도의원)	"
전북	18인 이내	"	(교),(도) 국(과)장급 공무원	미 포함	"
제주	10인	"	(교),(도) 국(과)장급 공무원 도의회 의장 추천 의원 2인	2명 (도의원)	2회

※ 의원 미포함 운영(5) : 서울, 경기, 울산, 경남, 전북

관계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 2018.1.1.] [법률 제11212호, 2012.1.26., 타법개정]

- 제41조(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교육행정협의회를 둔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과 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조례로 정한다.